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정·현원 직렬 불일치 및 복수직렬 정원 책정·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동구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업무 성질에 맞는 직렬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책정된 정원에 맞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6.3.6.) 현재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의 부서별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원으로 책정된 직렬과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현원으로 임명하거나, 해당 업무 성격과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 또는 일반관리업무가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로 볼 수 없는 직위도 행정직 복수 직렬을 책정한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위반사항: 불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 강화군수, 옹진군수, 중구청장, 남동구청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직렬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정원과 현원의 직렬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 및 인사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1】

<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자치단체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인천광역시	청라관리과장	과학기술4급	행정4급	
	월미공원사업소장	과학기술4급	행정4급	
남동구	치매정신건강과장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5급	행정5급	

【붙임2】

< 정현원 직급 불일치 사례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강화군	자치교육과	행정·전산 9급	사서8급	•읍·면 이장단 및 반장 관리, 생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관리
	건축허가과	농업·녹지·시설 7급	행정6급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지 사후관리

【붙임3】

<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강화군	해양수산물과	행정·해양수산물·시설·방재안전 7급	행정7급	•과 서무·회계, 공유수면 인·허가 및 관리
	강화읍	행정·사서·농업 8급	행정8급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강화읍	행정·보건·간호 8급	행정9급	•꽃길,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경로당 관리
	하점면	행정·세무·보건·간호 7급	행정8급	•주민등록, 민방위, 제증명
웅진군	교통과	행정·세무·시설6급	행정6급	•육상교통 •공영버스 운영 관리
중구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기술·간호8급	보건8급	•급여, 보안(비밀)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4대보험 업무 •물품·공유재산 문서 및 기록물 관리
	국제도시보건과	보건·의료기술·간호8급	보건8급	•과 서무 •보안관리, 통신, 재난관리 •물품, 공유재산, 기록물 관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5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시·도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자체 검토 후 폐지, 통폐합 또는 협의체 전환 등 위원회 정비기준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56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속한 정비(조례·규칙 개정 등)가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동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서구청장, 강화군수, 옹진군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통폐합 등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인 천 광역시 (4개)	공정경제위원회 제6조(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먹거리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0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5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3
중 구 (3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제15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등은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15
	월미관광특구진흥경관조성사업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특구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동 구 (2개)	인권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금창동 사업추진협의회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0
미추홀구 (2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제15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등은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15
연수구 (4개)	스마트도시위원회 제13조(스마트도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구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지역돌봄협의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7
	안전관리자문단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비사업민관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19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남동구 (1개)	노사민정분과협의회 제11조의2(분과협의회)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0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제14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과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서 구 (12개)	보육솔루션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0
	도시농업육성및지원심의회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세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서 구 (12개)	노사민정 협의회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중소기업 우수제품홍보관운영위원회 제8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우수제품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9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 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6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 제15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등은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13
	안전한마을협의회 제6조(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5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강화군 (23개)	기업유치위원회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입의)	조례 등	
강화군 (23개)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공업단지의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0
	갯벌센터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갯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갯벌 및 생태관련 전문 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갯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5
	강화군공무원보호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관광진흥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2
	세계유산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강화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안전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6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강화군 (23개)	청백이시스템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	6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	6
	공직윤리활동관리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공직윤리활동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	6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농업인 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 ①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강화군 (23개)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 제13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과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민간투자사업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5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7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0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9
	길상면 재창조사업추진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읍·면 재창조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7

자치단체명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 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웅진군 (5개)	역사편찬위원회 제2조(기능) 웅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선정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웅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9
	청정웅진7미 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청정웅진 7미 음식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웅진군 청정웅진 7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웅진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웅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7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미흡

기 관 명 중구, 동구, 남동구, 계양구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보 6대 지표*를 17개 시·도로 공문으로 통보('25.9.10.)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① 공무원 정원, ② 과장급 이상 비율, ③ 공무원1인당 주민수, ④ 현장공무원 비율, ⑤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⑥ 실·국·본부 수

그러나, 감사일 현재('26.3.6.) 인천광역시 관할 구·군의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자치구에서 아래와 같이 조직정보 공개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미흡 사례 >

자치단체	미흡사항
중 구	▶ 실·국·본부 수 미공개
동 구	▶ 실·국·본부 수 미공개
남 동 구	▶ 실·국·본부 수 미공개
계 양 구	▶ 실·국·본부 수 미공개

조치할 사항

중구청장, 동구청장, 남동구청장, 계양구청장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인천광역시 및 관할 구·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자문기관 운영현황 등 일부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보고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장, 강화군수, 옹진군수, 중구청장, 동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부평구청장, 계양구청장, 서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자문기관 운영현황 등을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구 분	인천광역시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2.12.27. '23.12.28. '24.12.27.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12.13. '23.12.7. '24.12.20. '25.12.9.	'22.12.29. '23.12.21. '24.12.30. '26.2.6.	'22.12.27. '23.12.22. '24.12.24. '25.12.29.	'22.12.22. '23.12.28. '24.12.31. '25.12.31.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2.12.27. '23.12.28. '24.12.27.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12.13. '23.12.7. '24.12.20. '25.12.9.	'22.12.29. '23.12.21. '24.12.30. '26.2.6.	'22.12.27. '23.12.22. '24.12.24. '25.12.29.	'22.12.22. '23.12.28. '24.12.31. '25.12.31.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2.12.27. '23.12.28. '24.12.27.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12.13. '23.12.7. '24.12.20. '25.12.9.	'22.12.29. '23.12.21. '24.12.30. '26.2.6.	'22.12.27. '23.12.22. (초과사유 미첨부) '24.12.24. '25.12.29.	'22.12.22. '23.12.28. (초과사유 미첨부) '24.12.31. '25.12.31.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22.12.27. '23.12.28. '24.12.27.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12.13. '23.12.7. '24.12.20. '25.12.9.	'22.12.29. '23.12.21. '24.12.30. '26.2.6.	'22.12.27. '23.12.22. '24.12.24. '25.12.29.	'22.12.22. '23.12.28. '24.12.31. '25.12.31.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2.12.27. '23 해당없음 '24.12.27. '25.12.30.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구 분	인천광역시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⑥ 전문인기제 운영 현황	'22.12.27. '23.12.28. '24.12.27. '25.12.30.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2 해당없음 '23.12.28.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22.12.5. '23.11.30. '24.12.3. '25.12.3.	'23.2.14. '23.12.15. '24.12.12. '25.12.12.	'22.12.13. '23.12.7. '24.12.10. '25.12.9.	'22.12.5. '23.11.24. '24.12.5. '25.11.26.	'22.11.4. '23.12.22. '24.11.4. '25.11.5.	'22.11.24. '23.11.23. '24.11.21. '25.11.20.
⑨ 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8.1. '23.5.1. '24 미제출 '25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2.28. '25.6.27.

구 분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12.12.	'22.12.13. '24.12.27. '23.12.22. '25.12.24.	'23.4.12. '23.12.6. '24.12.10. '25.12.12.	'22.12.23. '23.12.27. '24.12.26.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
②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12.12.	'22.12.13. '24.12.27. '23.12.22. '25.12.24.	'23.4.12. '23.12.6. '24.12.10. '25.12.12.	'22.12.23. '23.12.27. '24.12.26.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12.12.	'22.12.13. '23.12.22. '24.12.27. '25.12.24.	'23.4.12. '23.12.6. '24.12.10. '25.12.12.	'22.12.23. '23.12.27. '24.12.26. '25.12.30.	'23.1.4. '24.3.11. '25.2.14. '25 미제출	-
④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 진단 결과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12.12.	'22.12.13. '23.12.13. '24.12.27. '25.12.24.	'23.4.12. '23.12.6. '24.12.10. '25.12.12.	'22.12.23. '23.12.27. '24.12.26. '25.12.30.	'22.10.26. '23.8.28. '24 미제출 '25 미제출	-
⑤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22 미제출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미제출 '25 미제출	-

구 분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
⑥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
⑦자율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22 해당없음 '23 해당없음 '24 해당없음 '25 해당없음	-
⑧중기기본 인력계획	'22.12.14. '23.12.22. '24.12.13. '25.12.12.	'22.12.13. '23.12.22. '24.12.27. '25.12.24.	'22.12.7. '23.12.6. '24.11.15. '25.11.10.	'22.12.6. '23.12.12. '24.12.10. '25.12.11.	'22.12.2. '23.12.1. '24.11.25. '25.11.25.	-
⑨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장부제 및 조치결과 등)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12.24.	'22 미제출 '23 미제출 '24.12.12. '26.1.30.	'22 미제출 '23.11.17. '24.11.26. '25.12.30.	'22 미제출 '23 미제출 '24 미제출 '25 미제출	-